

○ 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(판매기업용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약관, 약정서명	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(판매기업용) (구 하나은행)	전자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(판매기업용)	(구)하나은행과 (구)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(구 하나은행) 명칭 삭제
약관, 약정서 내 타 약관, 약정서명	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	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	전산통합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세부 내용변경 2015.08.25자 금 결원 발송공문(문 서번호: 전자어음 팀-147, 「전자채 권 결제제도 기본 약관」변경 추진 관련 협조요청) 반영	<p>제 9 조 (약정의 해지 등) 본 약정은 은행 또는 본인이 서면으로 해지통보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최근 1 년이상 전자채권 보관 등 이용실적이 없어 은행이 임의로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 개월 전에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</p> <p>제 11 조 (손실부담 및 면책) ① 다음 각 호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은행에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</p> <p>1. (생략) 2. (생략) <신설> ② (생략)</p>	<p>제 9 조 (약정의 해지 등) 본 약정은 은행 또는 본인이 해지통보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최근 1 년이상 전자채권 보관 등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은행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.</p> <p>제 11 조 (손실부담 및 면책)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 1.(현행과 같음) 2.(현행과 같음) 3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

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,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